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8-23
----------	-------

제출년월일 : 2018.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 이유

지식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변혁의 흐름속에서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가치 의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의 목적

- 1) 작은도서관 조직·인력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탄력적인 인력 관리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
- 2) 기존 위탁 운영중인 작은도서관(8개관)과 협력과 조화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필요

나. 민간위탁의 내용

- 1) 위탁기간 : 2018. 7. 1. ~ 2019. 12. 31. (1년 6개월)
- 2) 위탁운영 시설현황
 - 시설명 :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 위 치 : 아현동 770(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지하1층)
 - 면 적 : 260.69m²
- 3) 위탁사무 범위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
 - 도서 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서관 물품 및 시설 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4)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5)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별도 구성)

다. 추진 일정

- 1) 공개모집 공고 : 2018. 5. 2
- 2) 신청서 접수 : 2018. 5. 23. ~ 5. 29.
- 3) 선정 심사 : 2018. 6. 18. ~ 6. 22.(기간 중 1일)
- 4) 심사결과 발표 : 2018. 6. 25.
- 5) 협약 체결 : 2018. 6. 29.
- 6) 위탁 운영 : 2018. 7. 1. ~ 2019. 12. 31. (1년6개월)

※ 추진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2018년 소요 예산 : 38,343천원(구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사업. 끝.